

서 면 답 변 서

질의의원	이 수 현 의원	소 속	평창군의회
답 변 자	평창군수(기획감사실장)	일 자	질의 : 2003.12.16 답변 : 2003.12.17
회 의	제108회평창군의회(정례회) 제6차 예결특위		

질문요지

2004년 당초예산심의 관련 서류

답변내용

1. 국제교류관련 여비집행내역

외빈초청여비

(단위:천원)

방문단체명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합 계	20,250	13,527	6,723	
대만복두JC		960		
시오자와정 중학교		1,680		
의왕시고척동(미탄면)		1,300		
도가촌(효석문화제)		5,448		
가고시마현 의원		1,560		
관악구청 교류협력		1,760		
하쿠바의회의원		819		

민간인 해외여비

(단위:천원)

방문단체명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합 계	30,000	14,489	15,511	
도가무라 겨울축제(도암면)		3,618		
도가무라 사축제(봉평면)		10,871		

2. 평창광희대학 다목적광장 설치내용

○ 평창광희대학진입로 및 다목적광장조성 지원계획사본 : "붙임"

3. 200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 "붙임"

4. 군정홍보비 지출내역

구 분	지 출 내 역	지 출 금 액	지 출 처	비 고
합 계		99,354,000		
03-1-27	대관령눈꽃축제 스포츠방송	5,500,000	원주MBC	
03-1-29	술내음농특산물홍보	1,650,000	한국영농신문	
03-2-3	대관령눈꽃축제 홍보	8,600,000	강원,도민,전국매일	
03-2-27	해외홍보(동계올림픽관련)	2,750,000	뉴스월드(월간지)	
03-3-5	2010동계올림픽홍보	13,200,000	강원,도민,전국매일	
03-4-1	해외홍보(동계올림픽)	2,750,000	코리아포스트(월간지)	
03-4-14	농특산물홍보	1,650,000	한국농어민신문	
03-4-28	동계올림픽광고료	6,600,000	비즈니스저널(월간지)	
03-6-2	동계올림픽홍보광고료	3,000,000	한국체육학회지	
03-6-20	동계올림픽홍보광고료	6,600,000	강원,도민일보	
03-7-1	강원뉴스포커스 올림픽광고	2,750,000	강원일보	
03-7-1	포토뉴스올림픽광고	2,750,000	도민일보	
03-7-14	TBN원주교통방송협찬광고료	1,254,000	TBN(원주교통방송)	
03-7-22	동계올림픽협찬광고	5,500,000	원주MBC	
03-7-25	동계올림픽유치결정에 따른 광고	8,600,000	강원,도민	
03-9-1	HAPPY700정정농특산물광고	1,100,000	도민	
03-9-15	생활체전,강원발전의원한마음홍보	5,300,000	강원도민회,강원일보	
03-9-24	제11회 도민생활체전홍보	11,000,000	강원일보,도민일보	
03-12-1	전국JC회원대회 홍보	3,300,000	강원	
03-12-1	산물예방홍보	5,500,000	도민일보	

5. 2003년도 각종위원회 개최횟수 및 수당책정내역, 총지급내역 : "붙임"

평창광희대학진입로 및 다목적광장조성지원

- 평창 지역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해소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 지역주민 스스로가 대학유치위원회를 결성 부지매입기금조성하고
- 그 결과 광희특수전문대학을 유치하고 설립인가 획득(2001. 3. 5)

□ 개 요

- 위 치 : 평창군 평창읍 약수리 209 - 1번지 일원
- 부 지 : 50필지/143,253㎡(43,334평)
※ 대학유치위원회 : 부지매입회사 - 33필지/99,493㎡(350여만원 모금)
- 규 모 : 건물 10개동 11,200㎡(2,370평)
※ 1차로 대학본부(지하1층, 지상4층) 건축면적 2,370㎡(717평)건립
- 모집학과 : 4개학과 240명(연극영화, 전통문화전수, 사회체육, 관광경영)
- 설립자 : 학교법인 광희학원 이사장 황희상(현 동해대 운영)

□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대학설립추진위원회》

- 대학유치추진위원회 구성 : 1997. 2. 24
- 대학유치 서명운동전개 및 후보지 선정 : 1997. 3. 18
- 부지매입을 위한 평창읍민 모금운동 전개 : 1998. 10. 12 ~
- 학교법인 광희학원과 협약체결 : 1999. 9. 8
- 대학설립 인가획득(교육인적자원부) : 2001. 3. 5
- 대학건립기공식 : 2002. 5. 13(유치위원회부지 매입 회사)

《광 학 대 학》

- 광희학원 흥희표이사장 대학설립의사 : 1998. 7. 3
- 평창광희대학 설립인가(교육인적자원부) : 2001. 3. 5
- 대학건립조성지역 부지매입완료 : 12필지/24,026m²(7,268평)
- 국유지(산림청) 3필지/15,174m²(4,590평)매입
- 평창광희대학건립기공식 : 2002. 5. 13

《평 창 군》

- 공공용지입지승인 : 2001. 9. 13
- 인·허가 적극 지원(농지전용, 산림형질변경, 건축, 하천점용 등)
- 국유지(재정경제부) 2필지/4,560m²(1,379평)무상임대사용조치
- 대학진립로 공사(80%) ⇒ 실질적으로 입탄리(농어촌도로)진입도로 임

□ 대학건립추진상황

- 대학본부건립예정지 부지정지완료 : 2003. 4. 30
- 묘지이장 : 10기
- 식수 및 생활용수를 위한 지하수개발 완료 : 2003. 5. 30
- 대학본부(지하1층, 지상4층) 2,370m²(717평)착공 : 2003. 4. 30
⇒ 지하 및 지상4층골조공사 완료 : 50%(11. 20현)
- 대학건립(1차분) 6. 30일현재 80%이상 되어야만 대학생모집승인
⇒ 교육인적자원부
- 따라서 2004학년도 대학생모집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
⇒ 2005년도 개교를 위하여도 적극적인 지원 필요

□ 조기 개교를 위한 지원

《우리군에 지원요청》 (대학건립추진위원회 + 대학설립자)

○ 대학진입로 및 다목적광장 조성비 지원요청 : 6억원

⇒ 조성면적 : 6,610㎡(약 2,000여평)

※ 입탄리 진입로와 연계하여 광장조성(주차장 등 다목적이용)

○ 제도적인 검토

- 법적인 검토 : 지원가능 - 【지방재정법 제14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 및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지원대상)】 — 법령내용 별첨

○ 검토의견

- 당초의 대학유치 목적이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지역주민들 스스로 추진하였고

- 추진목적이 우리군에서 목표로하고 있는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합됨으로 지원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지난해 동해대학이 태풍루사로 인해 복구사업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본 대학건립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함.

○ 지원방법

학교법인에 시설을 대행시키고 관리감독실시

○ 지원에 따른 제도적 장치 마련 : 협약체결

※ 2005년도 개교 불가시 군비를 투자하여 조성한 부지에 대하여 평창군에 기부채납할 것을 명기

○ 재원확보 및 지원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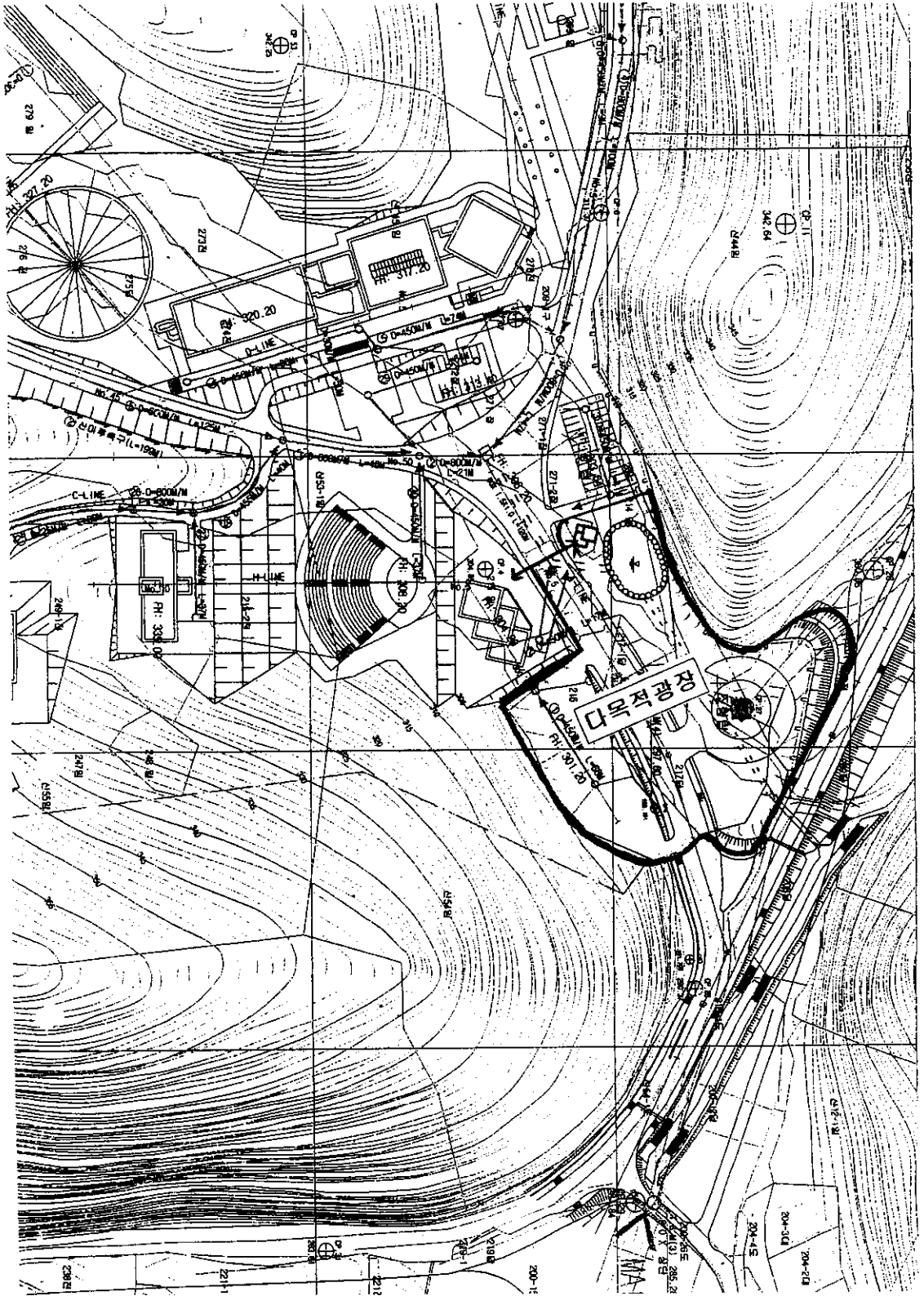
⇒ 2004년도 당초예산에 확보 지원

- 붙임 : 1. 지방재정법, 사립학교법 및 평창군조례요약 1부.
2. 소요예산판단조서 1부. 끝.
3. 참고사항 : 횡성군 송호대학지원내역 1 부.

공사 시행 계획

(단위 : 천원)

NO	구 분	공 사 개 요	공 사 비	비 고
1	진 입 도 로	B = 15.0M, L=90M · 아스콘포장 : A=10.0a · 인터로킹포장 : A=5.0a	₩130,000-	
2	광 장 조 성	· 2개소 : A= 5,000M2 · 아스콘포장 : A=41.6a · 우레탄포설 : A=8.1a · 상징탑설치 : 1개소 · 성 토 : 40,000M3 · 줄 때 : 1,000M2 · 생태연못 : 1개소	₩330,000-	
3	배 수 로	· BOX : 1.5*1.0 L=70M · 배수관 : Ø450 L=70M · 풀름관 : 0.5*0.5 L=150M · 우수받이 : 20개소 · L형측구 : 350M	₩140,000-	
계			₩600,000-	



지방재정법

第14條 (寄附 또는 補助의 제한) ①地方自治團體는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公共機關이 아닌 團體에 寄附·補助 또는 기타 公金の 支出을 할 수 없다.

1. 法律에 規定이 있는 경우
2. 國庫補助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國家가 지정한 경우
3. 用途를 지정한 寄附金에 의한 경우
4. 地方自治團體가 勸獎하는 事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機關과 地方自治團體가 勸獎하는 事業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 (공공기관의 범위등) ①법 제14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5.11.30>

②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5.11.30>

③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등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의2 (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라 함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재해를 당한 공유건물의 복구와 공공청사의 정비, 기타 공유재산의 조성·관리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개정 1998.7.16>

[본조신설 1990.11.6]

제25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상 재정지원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전년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2.3.30, 1994.12.23, 1998.7.16, 2001.9.15>

제2장 경비의 부담

제26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등)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되는 금액 및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제외한다)의 종목과

사립학교법

第6節 지원과 監督 <개정 1990.4.7>

第43條 (지원)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教育의 振興上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私立學校教育의 지원을 위하여 大統領令 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補助를 申請한 學校法人 또는 私學支援團體에 대하여 補助金을 交付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64.11.10, 1990.4.7>

②管轄廳은 第1項 또는 第3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學校法人 또는 私學支援團體에 대하여 다음 各號에 規定하는 權限을 가진다.<개정 1964.11.10, 1981.2.28, 1990.4.7>

1.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學校法人 또는 私學支援團體로부터 그 業務 또는 會計의 狀況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

2. 당해 學校法人 또는 私學支援團體의 豫算이 助成의 目的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豫算에 대하여 필요한 變更措置를 勸告하는 일

③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 또는 第3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學校法人 또는 私學支援團體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 支援成果가 低調하여 계속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學校法人 또는 私學支援團體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管轄廳의 勸告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후의 지원은 이를 中斷할 수 있다.<개정 1964.11.10, 1981.2.28, 1990.4.7>

第43條의2 삭제<1977.12.31>

第44條 (實業教育의 優先的인 지원)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第43條第1項 또는 第3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學校法人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實業學校를 設置·經營하는 學校法人에게 優先權을 주어야 한다. <개정 1976.12.31, 1990.4.7>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7조 (국가의 지원대상)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지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행한다.<개정 1990.7.19>

1. 실업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2. 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수한 학과 또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학교경영에 재정적 곤란을 받는 학교법인.
4. 특수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5. 기타 특히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법인.

②제1항의 보조 또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6.1.16, 1990.7.19, 1991.2.1, 2001.1.29>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군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보조대상)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998년 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서

부:	상주 의새 자 능 황 지 향 형	수 탁 표 마 소 득 공 성	도 락 소 주 만 구 지 방 역 성 담	사 회 보 독 생 활 조 공 업 개 군 건 설	도 호 사 업 안 정 및 단 자 발 주 설	사 기 영 운 기 관 리 및 사 차 원	업 관 관 사 관 사 관 업 관 업 관 업 관 업 관 업 관	특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특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회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계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	--	--------------------------------------	---	---	--	---	---	---	--	---	---

(97. 12. 19. 승인)
 (98. 5. 15. 승인)
 (98. 10. 17. 승인)
 (98. 12. 26. 승인)

회 성 군

장:(3000)경제개발

관:(3300)국토자원보존개발항:(3330)건설관리

세항:(3332)도로건설

세세항:(200)사업예산

[단위:천원]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산 출 가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 둔내주차장시설공사 95,000,000₩ x 1삭 = 95,000
					○ 추계사리도정비 = 80,000
					○ 남산리간선도로확·포장공사 (500m) 경경(894,000,000₩) - 기경(849,000,000₩) = 894,000
		11,000	0	11,000	05 시설부대비 ○ 둔내주차장시설공사 = 5,000
					○ 남산리간선도로확·포장공사 1,500,000,000₩ x 0.36% = 6,000
3400	교통관리	561,842	182,711	179,131	
3410	교통행정	361,842	182,711	179,131	
3411	교통관리	361,842	124,580	237,262	
100	경상예산	177,206	15,280	161,926	
130	경상적경비	177,206	15,280	161,926	

학교법인 광희학원

우 240-713 강원도 동해시 지흥동 산119 / 전화:033-520-9004 / 전송:033-521-9907
 기획실 담당자 정기현

문서번호 학법광희 제2003-94 호
 시행일자 2003. 10. 25. (년)
 공개여부 (미공개)
 수 신 평창군수 귀하
 참 조 기획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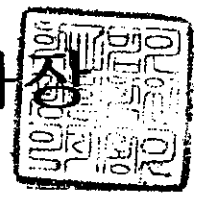
선 람	강	정기현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2003. 10. 20	결 재	부 장	←
	번호	5302		실 장	정기현
처 리 과	계획실		공 람		
담 당 자					
심 사 자			심 사 일		

제 목 평창 광희특수전문대학 시설 지원 요청 - 여신장 정기현

1. 평창군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학교법인 광희학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창군 평창읍 약수리 소재 광희특수전문 대학의 시설공사는 2004년도 개교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본 학교법인에서 유지 경영 하는 동해대학교가 2002년 9월 태풍 루사로 인하여 100억원대의 교내 시설 피해를 당한 후 수 해 복구공사에 따른 재정 지출이 극심하여 어려운 가운데도 평창 대학의 시설 공사가 조기 진 행토록 노력 하였으나 금년도 우기로 인하여 공사진행이 늦어져서 공기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 유감으로 생각하며,
3. 평창 대학의 시설사업에 가일층 진력하여 공기를 앞당길 계획이오나 대학진입로 주변 환경이 가시권을 벗어나 있어 진입로 입구에 별지 공사 시행계획과 같이 광장을 조성하 여 상징탑을 설치하기로 본 학교법인에서 시공계획을 수립 하였는바 이는 현재 시설공사중인 대학시설공사와 병행하여 준공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대학정문 밖 시설공사로서 학원 의 재정여건을 고려 귀 군에서 지원 시공토록 사려 깊은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붙 임 : 1. 평창전문대학 조성계획 1부
 2. 시설공사 시행계획 1부. 끝.

학교법인광희학원이사장



2004 社會團體補助金 支援計劃

- 2004년부터 정액보조단체(13개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을 폐지하고, 기존의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Ceiling제)를 도입함에 따라,
- 2004년도 각 부서별 사회단체보조금 요구예산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 조정함으로써, 갑작스런 제도변경에 따른 지원중단·누락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함.

1. 예산지원절차

- 보조금 예산편성 : 지원상한액(420,520천원) 포괄 계상
- 보조금 신청접수 및 심사확정 : 정기 및 수시 구분 운영
 - 정기 : 2004. 1~2월 ⇒ 지원상한액의 80%
 - 수시 : 2004. 3월이후 수시 ⇒ 지원상한액의 20%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12월중 조례 제정**

2. 2004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요구현황

- 총 요구액 : 3,317,340천원(111개사업)
- 지원상한액 : 420,520천원(요구액의 13%)
- 부족액 : 2,896,820천원(요구액의 87%)

《우리군 지원상한기준액 산정》

$$[기초기준액(340,000천원)] + [35 \times '03 \text{ 당초일반회계예산규모}/100,000] + [15 \times \text{자치단체면적}(km^2)] + [36 \times 2003. 6\text{월말 주민등록상 인구수}/100]$$
$$[340,000] + [35 \times 120,611,967/100,000] + [15 \times 1,464] + [36 \times 45,402/100] = \mathbf{420,520\text{천원}}$$

3. 2004 지원계획 조정(안)

(단위 : 천원)

구 분	계	직접지원	심사지원	국·도비보조시 지원
단 체 수	110	29	49	33
총요구액	3,317,340 (100%)	1,322,081 (40%)	600,760 (18%)	1,394,499 (42%)
기반영액	2,229,710 (67%)	1,106,370	-	1,123,340
향후지원검토	906,419 (27%)	34,500	600,760	271,159
지원제외	181,211 (6%)	181,211	-	-

□ 타과목으로 별도계상 직접지원

- 대 상 : 사회단체보조예산중 타과목 조정이 가능한 보조금
 - 민간행사보조·위탁(307-04) 등
 - 군·읍면단위 행사 : 노성제, 효석문화제, 대관령눈꽃축제, 읍면체육대회 등
 - 도 주관행사 참가 : 도민체전, 도민생활체전, 강원민속예술축제, 도지사배대회
 - 군 운영시설 위탁 : 종합자원봉사센터, 노인복지회관, 문화예술회관 공연지원
 -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차량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308-06) : 농약전수학교, 주종목육성지원 등
 - 민간경상보조(307-02) 등 : 푸드뱅크운영, 야생조수먹이주기, 한우개량등록
- ※ 개별지원사업중 2004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사업은 1회추경 계상 지원

□ 심사지원

- 대 상 : 정액보조 및 임의보조단체중 타과목 계상이 안되는 단체
- 2004년 1월중 신청을 받아 지원액 일괄 심사지원

□ 국도비 보조시 지원

- 대 상 : 국도비 보조에 따라 지원되어 오던 사회단체보조금
- 국도비 지원시에만 당초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 지원

□ 예산지원계획 조정내역

○ 타과목으로 별도계상 직접지원

(단위 : 천원)

부서별	부서별	사 업 명	2003 예산액	2004 요구액	2004 당초반영	비고	
계		29개단체(21개단체)	1,025,540	1,322,081	1,106,370		
직접지원	자치행정 (9)	평창군종합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평창군자원봉사센터)	21,740	54,521	54,521	307-05	
		자원봉사참가자 급식(")	0	5,000	5,000	307-05	
		사랑의집 고쳐주기(")	0	5,200	5,200	307-05	
		자원봉사자 기초전문교육(")	0	10,000	5,279	307-05	
		자원봉사센터 차량 지원(")	0	30,000	0	향후지원	
		자원봉사자대회 개최(")	0	4,500	0	향후지원	
		평창군이장연합회 체육대회 (평창군이장연합회)	8,000	12,500	8,000	307-04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다짐대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평창군지회)	0	8,000	8,000	307-04	
	새마을지도자 합동연수(")	0	8,480	8,490	301-09		
	문화관광 (15)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 (문전평농사놀이보존회)	13,000	15,000	13,000	307-04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공연 (문화원, 효석문화제, 노성제위원회)	30,000	50,000	30,000	307-04	
		음평농악전수학교 (문전평농사놀이보존회)	20,000	20,000	10,000	308-06	
		노성제 및 군민의날행사 (노성제위원회)	260,000	320,000	260,000	307-04	
		지역단위축제(평창강민속축제위원회, 무이달맞이축제위원회등)	60,000	65,000	50,000	307-04	
		대관령눈꽃축제 (대관령눈꽃축제위원회)	150,000	100,000	50,000	307-04	
		효석문화제(효석문화제위원회)	100,000	100,000	100,000	307-04	
		주중목욕성(관내고등학교 5개교)	15,000	15,000	15,000	308-06	
		꿈나무육성(평창교육청)	50,000	50,000	50,000	308-06	
		도지사배 각종체육대회 출전 (평창군생활체육협의회)	40,000	80,000	40,000	307-04	
		읍면체육대회(읍면체육회)	40,000	40,000	40,000	307-04	
		HAPPY700 전국하프마라톤대회 (평창군육상연맹)	50,000	50,000	50,000	307-04	
		군수배체육대회 및 체육의날 행사 (평창군생활체육협의회)	20,000	20,000	20,000	307-04	
		도민체육대회 출전(평창군체육회)	130,000	130,000	130,000	307-04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 (평창군생활체육협의회)	0	50,000	50,000	307-04	
		환경복지 (3)	야생조수먹이주기 활동 (자연보존평창군협의회)	1,000	1,000	1,000	301-09
			노인복지회관 운영 (대한노인회평창군지회)	0	32,400	57,400	307-05
			푸드뱅크 운영(동산교회)	3,000	6,000	6,000	307-02
		축산경영 (2)	한우품질개량 등록지원사업 (평창낙농검정회)	13,800	16,800	16,800	301-11
			한우개량지정종모우 정액지원사업	0	22,680	22,680	402-01

○ 심의위원회 심사지원

(단위 : 천원)

지원계획	부서별	사 업 명	2003 예산액	2004 요구액	2004 당초반영	비고
계		49개단체(34개단체)	406,700	600,760		
심사지원	자치행정 (9)	민주평통군협의회	4,600	10,460		
		지방행정동우회	5,000	5,000		
		지음강방연합회 기술경연및체육대회 (평창군지음강방대연합회)	5,000	5,000		
		새마을단체(군, 읍면지회)	55,200	55,200		정액보조
		새마을지도자 선진지견학 (새마을운동중앙회평창군지회)	0	9,000		
		새마을지도자 바른사람들운동 (새마을운동중앙회평창군지회)	0	10,000		
		바르게살기단체(군, 읍면협의회)	29,600	29,600		정액보조
		한국자유총연맹군지부 (한국자유총연맹평창군지부)	12,000	12,000		정액보조
		재향군인의날 및 6.25행사 (평창군재향군인회)	6,000	9,000		
	문화관광 (14)	평창문화원	20,000	20,000		정액보조
		가산문학선양회	0	37,000		
		가산이춘석선생 추념식 (가산문학선양회)	2,000	2,000		
		봉산서재 다례제향제(봉평유림회)	2,000	2,000		
		전통향토민속육성 (평창문화원, 둔전평농사놀이보존회)	20,000	30,000		
		충효교실운영(평창향교)	5,000	5,000		
		산촌민을 위한 삼굿축제	0	20,000		
		평창군체육회	2,400	20,000		정액보조
		평창군체육회사무국 인건비. (평창군체육회)	28,000	35,000		
		회장배전국롤러스키대회 (도암면체육회)	10,000	10,000		
		강원역전마라톤대회 (평창군체육회)	0	5,000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 (평창군생활체육협의회)	0	10,000		
		각종체육대회 유치 (평창군생활체육협의회)	20,000	30,000		
		3.1절 단축마라톤대회 (평창군생활체육협의회)	3,000	3,000		

환경복지	(18)	HAPPY700푸른평창21추진협의회	5,500	8,000		
		대한노인회군지회	10,000	10,000		정액보조
		노인한미당잔치(대한노인회군지회)	12,000	12,000		
		노인학교 운영(대한노인회군지회)	5,000	5,000		
		노인게이트볼대회 출전 (대한노인회군지회)	5,000	6,000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읍면경로당)	10,000	10,000		
		노인일거리 제공사업(읍면경로당)	26,400	33,000		
		평창군상이군경회	10,000	10,000		정액보조
		평창군전물군경유족회	10,000	10,000		정액보조
		평창군전물군경미망인회	10,000	10,000		정액보조
		평창군무공수훈자회	10,000	10,000		정액보조
		여성단체 화합체육대회 (평창군여성단체협의회)	5,000	5,000		
		보육시설연합체육대회 (평창군보육시설연합회)	0	3,000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운영 (지체장애인협회평창군지회)	16,000	16,000		
		장애인의날 행사 (지체장애인협회평창군지회)	6,000	7,000		
		장애인 하계캠프 참가 (지체장애인협회평창군지회)	3,000	5,000		
		장애인 더불어체육행사 (지체장애인협회평창군지회)	6,000	7,000		
		흰지팡이의날 행사 (시각장애인협회평창군지회)	1,000	1,500		
농업경영	(8)	평창군농업경영인대회 (평창군농업경영인연합회)	8,000	8,000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 (평창군농촌지도자연합회)	4,000	4,000		
		농업인의날 행사 (평창군농촌지도자연합회)	10,000	10,000		
		평창군여성농업인 하계수련대회 (평창군여성농업인연합회)	4,000	4,000		
		여성농업인대회 소시지연청 농촌체험여행	0	3,000		
		여성농업인 강원도대회	0	10,000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	0	14,000		
		학습단체사무실 사무기기지원	0	5,000		

○ 국·도비 보조시 지원(보조사업)

(단위 : 천원)

지원계획	부서별	사업명	2003 예산액	2004 요구액	2004 당초반영	비고
계		33개단체(20개단체)	1,471,159	1,394,499	1,123,340	
국·도비 보조시지원	자치행정 (4)	자원봉사활동(평창군자원봉사센터)	14,000	20,000	20,000	307-03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4,000	4,000	4,000	307-03
		봉사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4,000	4,000	4,000	307-03
		자원봉사자대학 운영(“)	10,000	10,000		
	문화관광 (11)	향토기로운 재현(평창향교)	2,700	2,700	2,700	307-04
		문화원사업 활동(평창문화원)	48,000	48,000		
		문화원 사랑방사업(“)	11,000	11,000	11,000	307-03
		문화학교 운영(“)	6,000	6,000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10,000	20,000		
		문고자료 구입(마을문고장)	8,000	8,000		
		생활체육교실운영(생활체육협의회)	9,823	9,823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평창군생활체육협의회)	40,176	40,176		
		국민생활체육 진흥사업 (평창군생활체육협의회)	26,874	26,874		
		청소년어울마당(청소년관련단체)	10,000	10,000		
		청소년공부방 운영(공부방3개소)	30,000	20,000		
		환경복지 (18)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시각장애인협회평창군지회)	3,600	4,800	9,600
	조건부신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엘리에셀, 꿈동산, 진부노인의집)		9,333	10,266	20,400	307-02
	사회복지협의회		30,000	30,000	40,000	307-02
	경로당 운영(읍면경로당)		65,460	152,160	109,800	307-03
	재가노인 식사배달(송인금외7인)		39,240	43,164	44,400	307-03
	경로식당 무료급식 (평창제일감리교회외 4개소)		57,264	62,990	27,360	307-03
	노인일거리 마련(읍면경로당)		4,800	4,800	6,000	307-03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읍면경로당)		2,000	2,000	4,000	307-03
	노인쉼터조성사업(읍면경로당)		10,000	10,000	24,000	307-03
	노인보람일터가꾸기(읍면경로당)		11,000	11,000	12,000	307-03
	장수노인 생신하례 (대한노인회평창군지회)		2,080	2,080	1,000	307-03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평창군여성자원봉사센터)		1,000	1,000	1,000	307-02
	보육시설 운영비(평창어린이집외7)		898,846	714,203	695,637	307-02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30,763	30,763	15,243	307-02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5,300	5,300	5,300	307-02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평창군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45,500	49,000	45,500	307-03
	시각장애인 점자교실 운영 (시각장애인협회평창군지회)		2,400	2,400	2,400	307-03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지체장애인협회평창군지회)		18,000	18,000	18,000	307-03

2003년 각종위원회운영과 관련
수당책정내역 및 총지급내역

(2003.12.17현재기준)

실과별	위원회명	산출기초 예산액(천원)	지출액 (천원)	개최 회수
기 획 감사실 (8)	평창군정조정위원회	-	-	16
	평창군조례규칙심의회	-	-	14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50,000원×5회×5명 =1,250	350	2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회위원회	-	-	2
	21C신지식자문위원회	-	-	-
	평창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50,000원×2회×12명=12,000	750	2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	1
	평창군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	50,000원×2회×8명 =800	-	-
민 원 봉사과 (2)	평창군민원조정위원회	-	-	2
	평창군토지평가위원회	50,000원×6회×12명 =3,600	1,800	4
자 치 행정과 (7)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	-	-	4
	평창군인사위원회	50,000원×10회×3명 =1,500	1,350	17
	평창군근무성적평정위원회	-	-	2
	평창군성과급심사위원회	-	-	1
	평창군공적심사위원회	-	-	42
	평창군행정규제개혁위원회	50,000원×6명×10회 =3,000	300	1
평창군자원봉사발전위원회	-	-	1	
재무과 (3)	평창군지방세심의위원회	50,000원×4회×10명 =2,000	350	1
	평창군과세표준심의위원회	-	-	-
	평창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	-	-
환 경 복지과 (3)	평창군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50,000원×2회×4명 =400	50	1
	평창군장애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	-	-
	평창군지방보육위원회	-	-	1
건설과 (2)	평창군안전대책위원회	50,000원×2회×5명 =500	-	-
	평창군지역안전대책실무위원회	50,000원×2회×8명 =800	-	-

지 역 도시과 (3)	평창군지방건축위원회	50,000원×4회×10명 =2,000	-	-
	평창군광고물심의위원회	50,000원×4회×5명 =1,000	-	-
	평창군도시계획위원회	50,000원×5회×17명 =4,250	650	1
보 건 사업과 (1)	평창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50,000원×1회×8명 =400	400	1
농 업 경영과 (2)	평창군농특산물전시판매장운영협의회	-	-	1
	평창군농정협의회	50,000원×3회×26명 =3,900	650	1
기 술 개발과 (1)	평창군농업산학협동협의회	2,000 (국비1,000, 군1,000)	400	2